제 2339호
2015. 01. 21.

발 행 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 집 인 : 공 보 실 장 장 운 기
전화 :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15-4호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 2
제2015-5호 : 서소문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및 고시 ····· 3
제2015-6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5
◉ 공 고
제2015-48호 :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과징금 및 과태료)관련 반송우편물 공시공달 ····· 6
제2015-56호 :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모집공고 ····· 8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서울특별시중구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4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지적도근점 번호	평면좌표(GRS80타원체)		평면좌표(베셀타원체)		소 재 지
	종선좌표 (X)	횡선좌표 (Y)	종선좌표 (X)	횡선좌표 (Y)	
9286	551740.89	198005.65	451435.00	197934.74	중구 정동 5-8
9287	551873.57	198163.22	451567.68	198092.28	중구 을지로1가 8
9288	551925.12	198216.14	451619.24	198145.20	중구 을지로1가 31
9289	552040.32	198213.90	451734.44	198142.96	중구 무교동 13-1
9290	552076.85	198219.83	451770.97	198148.89	중구 다동 39-2
9291	552078.79	198293.13	451772.91	198222.17	중구 다동 33-3
9292	552079.89	198339.13	451774.01	198268.17	중구 다동 97-1
9293	552042.30	198350.70	451736.42	198279.74	중구 다동 97-1
9294	552058.59	198415.27	451752.71	198344.30	중구 다동 85-3
9295	552048.02	198455.45	451742.15	198384.48	중구 다동 97-1
9296	551994.10	198452.69	451688.23	198381.72	중구 다동 97-1
9297	551844.17	198446.01	451538.30	198375.06	중구 을지로1가 100-1
9298	551726.87	198468.02	451421.00	198397.08	중구 남대문로2가 71-1
9299	551652.37	198452.65	451346.50	198381.71	중구 남대문로2가 13
9300	552023.62	198294.74	451717.73	198223.81	중구 다동 53-6
9301	551977.60	198286.30	451671.71	198215.37	중구 다동 172-3
9302	551921.79	198313.88	451615.91	198242.97	중구 을지로1가 79-1
9303	551845.82	198374.77	451539.93	198303.87	중구 다동 97-2

기 준 원 점 명	중 부 원 점	비 고
설 치 일	2015 년 1월 8일	
표 지 의 재 질	표철	
측량성과보관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지관리과	
비 고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5호

서소문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및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09.06)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8호(1978.12.29)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38호(2009.12.24)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31호(2011.05.26)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1-54호(2011.8.3)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사업시행(변경)인가(2012.8.22, 경미한 사항), 사업시행(변경)인가(2013.4.30, 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4-46호(2014.6.12)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변경)인가(2014.8.6, 경미한 사항), 준공인가(2014.9.19) 및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4-79호(2014.9.24)로 공사완료고시 된 "서소문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72)에 비치하고 분양대상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서소문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75번지 외 10필지

다. 정비구역의 면적 : 2,561.3㎡ (대지 1,990.0㎡, 정비기반시설 571.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 행 자 : 상진공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대식)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75

마.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5년 1월 19일

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층 수 (지상/지하)	높이 (m)	용 도	비고
1,990.0	1,190.24	59.81	28,318.85	999.14	지상20/지하6	95.05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2)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가) 분양대상자 및 분양면적

분 양 대 상 자		분양예정의 대지 및 건물			비 고
성 명	주 소	토지 (㎡)	건물 (㎡)	용도	
상진공영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75	497.605	7,172.96	업무시설	
		628.395	8,991.97	근린생활시설	
		1,126.0	16,164.93	계	

나) 보류지 시설 : 해당 없음

다) 체비지 시설 : 토지 864.0㎡, 건물 12,153.92㎡ (업무시설)

3)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가)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 (행정청에 무상귀속)

연번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공부상 지적	편 입 (도로)	성 명	주 소	
1	서소문동 75	대	2,054.9	216.0	상진공영(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75	※확정측량결과 225.2→216.0
2	서소문동 58-50	대	366.1	355.3	상진공영(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75	※확정측량결과 366.1→355.3
계				571.3			

나)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연번	저촉 국·공유지				무상양도 국·공유지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공부상지적	구역편입	무상양도 (㎡)	소유자	
1	서소문동 75-20	도로	163.6	5.9	5.9	중구	
2	서소문동 75-64	도로	17.6	0.3	0.3	국토해양부	
3	서소문동 75-71	도로	12.9	2.1	2.1	국토해양부	
4	서소문동 75-72	도로	33.4	18.3	18.3	국토해양부	
5	서소문동 75-79	도로	100.5	7.9	7.9	중구	
6	서소문동 75-80	도로	114.0	112.0	112.0	중구	
7	서소문동 75-88	도로	5.3	5.3	5.3	국토해양부	
계				151.8	151.8		

사. 기존건축물의 철거시기 : 2011년 11월

아. 관계서류 : 생략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비치서류와 같음).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96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79-2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96	2010.04.22.	행정구역 명칭 인용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1~5)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1. 2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고제목 :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과징금 및 과태료)관련 반송우편물 공시공달
2. 공고기간 : 2015. 01. 21. ~ 2015. 2. 05. [15일간]
3. 진술기간 : 2015. 01. 21. ~ 2015. 2. 05. [15일간]
4. 공고대상 및 통지사항

구 분	공 고 내 용			공고대상
사전통지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1(붙임참조)
처분통지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분			2(붙임참조)
독촉고지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독촉고지 반송분			2(붙임참조)
압류통지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3(붙임참조)
공고대상	중구 퇴계로 *, 장승*외 7명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문의처	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담당부서명	교통행정과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02-3396-6226, Fax 02-3396-8866]		

5. 안내사항

사 전 통지	위 예정된 과징금등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기한내 의견제출 하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처 분 통지	관련법에 의거 운수과징금(과태료)을 부과하오니, 고지내용 확인 후 조속히 납부바라오며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 경과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이후 매월 1월 경과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동안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독 촉 고지	독촉고지 대상자는 고지서를 발급 받아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농협·전국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압 류 통지	압류통지대상자는 빠른 시일내에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면 압류가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고내역 및 대상자명단 1부.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고내역 및 대상자 명단

공고내역									우편반송내역		
제목	과세대상	성명	주소	처분내용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의 법적근거	등기번호	반송사유	비고
행정처분사적통지반송분	장승*	장승*	서울 중구 퇴계로 88길 23-**(신당동)	화물유송종사자격취소	2014.03.19	정기적성검사(갱신)미필	운전면허취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제1항7호및동법시행규칙제33조의2관련【별표3】제7호	109561703****	수취인부재	
행정처분통지서반송분	서울80배104*	송창*	서울중구다산로31길63*동**,신당동	운수과징금5만원	2014.09.12.02:14	성광한의원앞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30조관련【별표3】제1호	109561702****	폐문부재	2014-10-****
행정처분통지서반송분	서울72바902*	금성**	서울중구북창동** 번지	운수과징금20만원	2014.10.24.03:10	서울 도봉구 방학1동676, 일초닭발집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8호 및동법시행규칙제30조관련【별표3】제6호	109561703****	이사불명	2014.01-**
과징금체납자독촉고지반송분	서울80배103*	김철*	서울 중구 퇴계로20나길 15-**, ***호(예장동)	운수과징금5만원	2014.02.21.15:02	서울 중구 서소문동(부영앞)	자동차외측표시미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별표6] 카목	1073433 18****	수취인부재	2014-07-**
과징금 체납자 독촉고지 반송분	서울85바778*	심영*	서울중구다산로36길*** 신당동현대@*-****	운전자과태료 25만원	2014.03.26.13:00	서울 중구 다산로36길 109, 6동1105호(신당동, 현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없이운전업무종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 제3호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별표5】제2의 라호	1073433 092****	수취인부재	2014-05-****
과징금체납자압류통지서반송분	서울80배103*	김철*	서울 중구 퇴계로20나길 15-**, ***호(예장동)	운수과징금5만원	2014.01.09.15:15	서울 중구 ytn방송사앞	차안에운전자격확인증미비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14호 및동법시행규칙제30조관련【별표3】제9호	10956-1701-****	폐문부재	2014-04-**
과징금체납자압류통지서반송분	서울84자783*	조병*	서울 중구 청구로10길 34-*, *층호	운수과징금5만원	2013.11.21.14:57	서울 중구 매봉18나길	자동차외측표시미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7조 시행령제46조제1조관련 【별표5】제25호	10956-1701-****	수취인불명	2014-03-**
과징금체납자압류통지서반송분	서울31바944*	이성*	서울중구동호로11나길69-*	운전자과태료 10만원	2013.06.21.23:30	하계시영단지 6단지아파트 상가앞	승차거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1항 제1호	19003-9319-****	폐문부재	2013-08-****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56호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모집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모집인원 : ○명

2. 모집분야 : 도시계획, 건축, 토목, 국토개발

3. 위촉기간 : 2년(2015. 03. 01. ~ 2017. 02. 28.)

4. 응모자격
   ❍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해당분야 조교수급 이상
      나.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해당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마.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

5. 응모기간 및 접수방법
   ❍ 응모기간 : 2015. 1. 21.(수) ~ 2015. 2. 3.(화)
   ❍ 접 수 처 : 중구청 도심재생과(본관 6층)
   ❍ 접수방법 : 우편 및 E-mail(chinup@junggu.seoul.kr), 방문접수 가능
      - 우편보내실 곳 : (우)100-701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도심재생과
      -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한함), 이메일(본인확인 필수), 방문접수(마감일 18:00까지)

6. 제출서류
   ❍ 지원서 1부.(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 다운로드 가능)
   ❍ 소속기관장 추천서(필요시) 및 재직증명서 1부.
   ❍ 기타 응모자격 또는 학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결과발표

❍ 자체심사 후 위촉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예정

8.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경우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타 시·도 및 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 위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 도심재생과 도시계획팀(☎3396-57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